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29
----------	------

2016년 1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0월 26일, 김광수(金光洙) 의원 외 23명
-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31일
- 다.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광수 의원)

### 가. 제안이유

- 초미세먼지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배출원별 영향이 교통 분야가 52%를 차지함에 따라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8년까지 전기자동차 12,020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음.

전기자동차 보급은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원활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최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대상, 종류 및 수량 등을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며,

공영주차장 등 서울시 및 자치구가 보유한 공공재산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경감함으로써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주차단위구획” 및 “이동형충전기”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5호 및 6호)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에 대한 권고 사항 규정(안 제4조제3항)
-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의 필요한 조치 사항 및 연간 대부료의 요율 규정(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충전시설 설치대상 규정(안 제7조의2)
- 충전시설 종류 규정(안 제7조의3)
- 충전시설 설치비율 규정(안 제7조의4)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 협의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설치대상 및 충전시설 종류 등을 규정하며, 대상별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규정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가 보유한 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대부요율을 인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상위법 개정 현황

- 2016년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신설)

- 또한, 2016년 6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공공건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주차장 등의 시설 중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현황

-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8년까지 전기차 12,020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시설 200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음.

<연도별 전기차/급속충전시설 보급 및 설치 계획>

(단위 : 대, 기)

구 분	계	~ '15년	'16년	'17~'18년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12,020 (200)	1,209 (57)	911 (63)	9,900 (80)

한편, 전기차 구입 시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반대로 완속충전기 설치가 무산되어 전기차 구입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등 전기차 보급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2015년 전기차 구매 포기자 취소사유별 현황>

계	입주자 대표회의 부동의	차량가격 부담 등 경제적 이유	대기기간 중 일반차 구매	기 타
650대	350대 (53.8%)	187대 (28.8%)	68대 (10.5%)	45대 (6.9%)

다. 검토의견

1)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전기차 구매 권고(안 제4조제3항)

- 현행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 산하기관,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40% 이상을 전기차 또는 연료전지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이에 서울시는 공공부문에서 전기차 보급을 선도함으로써 민간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용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16년 12월 현재 총 137대),

2018년까지 전기차로 구매가능한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의 차량 358대를 전량 전기차로 교체 할 계획에 있음.

<연도별 관용차 전기차 보급현황 및 계획>

연 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18년
전기차(대)	358	76	8	17	26	10	221

- 그러나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공기업<sup>1)</sup>은 의무구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지 않는 등 시 또는 산하기관 등에 비해 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실정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차량보유 현황('16.11월말)>

구 분	계	공 사	공 단	출자·출연기관
전체차량	250	107	103	40
전기차	3	-	-	3

-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의무구매 규정이 없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구매 보다 더 높은 시 자체 전기차 보급기준<sup>2)</sup>을 따를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요율 규정(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현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sup>3)</sup>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근거를 동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며, 민간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여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낮추어 정하는 것으로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1) 공사·공단의 경우 '15년부터 전기차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었고, '16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비율이 25%에서 40%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행거리 부족 등 용도상 전기차 교체 불가 등으로 전기차 구매실적이 없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구매 예정임.

2) '18년까지 전기차로 구매가능한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차량을 전량 전기차로 교체

3)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만큼 대부분요율 인하는 경제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충전시설 종류 규정(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안 제7조의2와 제7조의3은 충전시설 종류와 시행령(제18조의4제1호~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정한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구 분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p>&lt;시행령 제18조의4제1호&gt; ⇒ 안 제7조의2제1항제1호</p> <p>-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p> <p>·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p>
공동주택 및 기숙사	<p>&lt;시행령 제18조의4제2호&gt; ⇒ 안 제7조의2제1항제1호</p> <p>-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기숙사</p>
공영 주차장	<p>&lt;시행령 제18조의4제3호&gt; ⇒ 안 제7조의2제1항제2호</p> <p>-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p>

\* 공통조건 :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4) 충전시설 설치비율 규정(안 제7조의4)

- 현행 시행령 제18조의5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기숙사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안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기숙사(안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주차면 200면당 1개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영주차장(안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sup>4)</sup>의 규정에 맞추어 산업통상자원부 권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제1항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전시설 설치비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형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의3제2항5),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기숙사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에만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5)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충전시설 설치시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효율을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공동주택 등의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전기차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

---

5)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5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대상 기관 구분(의무·권장·제외)은 별표 8과 같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립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 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⑦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 "이동형충전기"란 벽면이나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을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

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여부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 ②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 ③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중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 ④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이전 또는 철거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시설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1호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시설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시장은</u>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u>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u>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u></p> <p>6. <u>"이동형충전기"란 벽면이나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u></p> <p>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u>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u> -----.</p> <p>③ <u>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u>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u></p> <p>1. <u>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u></p> <p>2. <u>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u></p> <p>② <u>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u></p>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여부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중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이전 또는 철거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시설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